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 한 동 의원)

의안 번호	23-129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.

발의자 : 이한동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
백남환, 신종갑, 오옥자, 차해영,
채우진, 최은하, 한선미

1. 개정이유

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·경제·문화·학술·체육·청소년 분야 등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음. 이에 “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”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동 조례의 목적을 “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(현행)”에서 “교류협력,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,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증진”(개정)으로 확대함.

나. 구청장의 역할 명시(안 제2조제2항)

-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함.

다.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함.
- 또한, 안 제4조제2항에 마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8. 17. ~ 8. 2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, 관련”을 “교류협력,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”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구청장이 제안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<u>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,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② 구청장은 <u>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류협력,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-----.</u></p> <p>제2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③ -----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</p>

	<p><u>구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구청장이 제안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</u></p>
<p>2.·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【관 계 법 령】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4조(기금의 용도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구청장이 제안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제2항제1호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정지현
연 락 처	02-3153-8204